합자회사(설립·운영)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자회사(설립·운영)]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2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에게 직접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게 재산출자의 가액을 한도로 직접 연대책임을 집니다.

합자회사를 설립하려면, ①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을 구성하고, ② 정관을 작성한 다음, ③ 법인설립등기와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모든 합자회사의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합자회사(설립·운영) 1
1. 회사제도 이해하기 4
1.1. 회사와 합자회사 4
1.1.1. 회사의 개념 4
1.1.2. 합자회사 개관 6
2. 합자회사 설립 11
2.1. 사원의 구성 및 정관작성 등 11
2.1.1. 사원구성 및 상호 정하기 11
2.1.2. 정관의 작성 12
2.2.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13
2.2.1. 인허가 및 세금납부 13
2.2.2. 설립등기 및 사업자신고 등 15
3. 합자회사 운영 18
3.1. 사원의 출자와 지분 18
3.1.1. 사원의 출자 18
3.1.2. 사원의 지분 21
3.2. 업무집행 및 대표권 22
3.2.1.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등 22
3.2.2. 합자회사의 대표 24
3.3. 사원의 의무와 책임 25
3.3.1.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제한 25
3.3.2. 사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7
3.4. 사원의 입사와 퇴사 30
3.4.1. 사원의 입사와 퇴사 30
3.5. 본점과 지점 34
3.5.1. 본점의 이전 34
3.5.2. 지점의 설치와 이전, 폐지 37
3.6. 회사회계와 손익분배 39
3.6.1. 상업장부작성 및 손익분배 39
4. 회사의 합병, 소멸 등 41
4.1.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41
4.1.1. 영업양도 41
4.1.2. 합병 43
4.1.3. 조직변경 47
4.2. 합자회사의 소멸 48
4.2.1. 해산 및 회사의 계속 48
4.2.2. 합자회사의 청산 51

1. 회사제도 이해하기

1.1. 회사와 합자회사

1.1.1. 회사의 개념

회사란?

회사의 개념

▪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상법」 제169조). 따라서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법인이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회사의 특성

▪ 영리성

▹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상법」 제16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대외적 수익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주주와 같은 구성원에게 분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 법인성

▹ 회사는 법인성을 가져야 합니다(「상법」 제169조). 법인성을 갖는다는 것은 구성원인 사원과 회사는 별개의 인격을 가지므로 회사는 사원으로부터 독립하여 별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사원은 회사재산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회사의 종류

「상법」상 회사의 종류

▪ 「상법」에서는 회사를 ① 합명회사, ② 합자회사, ③ 유한책임회사, ④ 주식회사, ⑤ 유한회사의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상법」 제170조).

합명회사

▪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가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12조제1항 참조).

▪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을 전담할 사원을 정할 수 있으며,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고, 여러 명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각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상법」 제200조 및 제207조 참조).

> ※ 합명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합명회사 설립·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

▪ 합자회사는 1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명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해 일정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68조 및 제279조 참조).

▪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유한책임사원은 대표권한이나 업무집행권한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감시할 권한을 갖습니다(「상법」 제273조, 제277조 및 제278조 참조).

> ※ 이 콘텐츠에서는 **합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합니다.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는 공동기업이나 회사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사적자치가 폭넓게 인정되는 조합의 성격을 갖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상법」에 도입된 회사형태로서 사모(私募)투자펀드와 같은 펀드나 벤처기업 등 새로운 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입니다[「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개정, 2012. 4. 15. 시행) 제·개정이유서 참조].

▪ 유한책임회사는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87조의7 참조).

▪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자가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 놓아야 하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12제1항 및 제287조의19 참조).

> ※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유한책임회사 설립·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 주식회사는 1명 이상의 사원(주주)으로 구성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채권자에게 아무런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331조 참조).

▪ 주식회사는 주주라는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므로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를 두어 정기적으로 이를 소집해야 하고,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두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또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감사와 같은 감사기관을 둡니다(「상법」 제361조, 제365조, 제382조, 제389조 및 제409조 참조).

※ 주식회사는 주식을 단위로 자본이 구성되므로 자본집중이 쉽고, 주주가 유한책임을 부담하므로 사업실패에 대한 위험이 적어 공동기업의 형태로 자주 이용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회사 형태 중 주식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95%에 달합니다[국세통계 > 세목별 검색(2025) > 8-1-2. 법인세 신고 현황II, 국세청 국세통계].

> ※ 주식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주식회사 설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

▪ 유한회사는 1명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553조 참조).

▪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없고 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를 위한 이사를 선임합니다. 선임된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각각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상법」 제561조, 제562조 및 제547조 참조).

※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형태의 조직을 갖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보다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사원총회 소집절차도 간소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 유한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유한회사 설립·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2. 합자회사 개관

합자회사란?

합자회사의 개념

▪ "합자회사"란 1명 이상의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과 1명 이상의 유한책임(有限責任)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합니다(「상법」 제268조).

▪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에게 직접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게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상법」 제279조 참조)로 직접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합자회사의 특징

▪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있다는 점에서 합명회사와 같지만, 유한책임사원이 있다는 점에서 합명회사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합자회사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상법」 제269조).

합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개관

합자회사의 설립절차

▪ 합자회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설립됩니다.

합자회사 설립절차	내용
사원의 구성	√ 합자회사의 사원은 1명 이상의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과 1명 이상의 유한책임(有限責任)사원으로 구성됩니다(「상법」 제268조, 제269조 및 제178조).

목적 및 회사명칭 정하기	√ 회사의 목적이란 회사의 존재이유 또는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정관을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회사의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79조제1호). √ 회사의 이름을 상호(商號)라고 합니다. 합자회사의 상호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합자회사의 상호에는 반드시 '합자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18조 및 제19조 참조).
정관작성	√ 합자회사의 정관은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 각각 1명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총사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178조 및 제179조). √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① 목적, ② 상호, ③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④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⑤ 본점의 소재지, ⑥ 정관의 작성년월일, ⑦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아니면 유한책임인지를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70조 및 제179조).
설립등기 및 법인설립신고 등	√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사항(「상법」 제180조) 각 호의 사항 외에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를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71조). √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필요서류를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 참조).

합자회사의 운영 개관

합자회사 운영	내용

사원의 출자	√ 사원은 정관에 의해 확정된 출자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79조제4호). √ 사원의 출자 방식에는 ① 재산출자, ② 노무출자, ③ 신용출자의 세 종류가 있으며, 정관에 규정한 출자의 목적에 따라 회사에 그 출자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195조, 제222조 및 「민법」 제703조제2항). √ 유한책임(有限責任)사원이 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재산출자(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 등)만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2조 참조).
사원의 업무집행	√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273조). ※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을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78조). √ 유한책임사원은 영업연도 말에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7조제1항). √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한책임사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그 밖의 서류를 열람 및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7조제2항).
회사의 대표	√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무한책임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7조제1문). √ 반면에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78조).

사원의 의무와 책임	√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무한책임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98조제1항 참조). √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무한책임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98조제1항). √ 반면에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으며,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5조).
사원의 입사와 퇴사	√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사원이 입사를 하려면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269조, 제179조제3호 및 제204조). √ 사원이 퇴사하는 사유로는 ① 임의퇴사(「상법」 제269조 및 제217조), ② 「상법」 상 퇴사원인에 따른 당연퇴사(「상법」 제269조 및 제218조), ③ 법원의 제명에 따른 강제퇴사(「상법」 제269조 및 제220조), ④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상법」 제269조 및 제224조)가 있습니다.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 등	√ 회사의 본점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말하며, 본점소재지가 회사의 주소가 됩니다. 합자회사의 본점소재지는 정관에 절대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본점의 소재지는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171조, 제179조제5호 및 제180조). √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81조).

회사회계와 손익분배	√ 회사는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해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29조제1항). √ 손익분배의 비율과 관련된 규정이 「상법」에 없으므로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총사원의 동의로 별도의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사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그 비율을 정합니다(「상법」 제269조, 제195조 및 「민법」 제711조제1항).

2. 합자회사 설립

2.1. 사원의 구성 및 정관작성 등

2.1.1. 사원구성 및 상호 정하기

사원의 구성

사원의 구성

▪ 합자회사의 사원은 1명 이상의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과 1명 이상의 유한책임(有限責任)사원으로 구성됩니다(「상법」 제268조, 제269조 및 제178조).

※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에게 직접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게 재산출자의 가액을 한도로 직접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279조 참조).

▪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하므로(「상법」 제173조 참조), 무한책임사원은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한책임사원은 될 수 있습니다.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비교

▪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무의 부담에 따라 회사에서의 권한이 다르며, 회사에 출자의 종류 등이 다릅니다(「상법」 제272조, 제275조, 제277조, 제279조 및 제283조 참조).

구분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출자의 종류	재산출자(금전출자·현물출자), 노무출자, 신용출자 모두 가능	재산출자(금전출자·현물출자)만 가능
지분상속	지분상속 할 수 없음	지분상속 가능
권한	업무집행권, 대표권, 이의권, 감시권	감시권
경업, 겸직	경업·겸직금지	경업·겸직가능
책임한도	무한(無限)의 책임부담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책임부담

설립목적 정하기

회사의 설립목적

▪ 회사의 설립목적은 회사의 존재이유 또는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합자회사의 사원은 정관을 작성할 때 반드시 회사의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79조제1호 참조).

▪ 또한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합자회사의 목적사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상법」 제169조 참조).

> ※ 그 밖에 회사의 설립목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주식회사 설립』의 < 주식회사 설립준비-설립목적 및

> 회사상호 정하기-설립목적 정하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 상호 정하기

상호 정하기

▪ **합자회사**의 이름을 상호(商號)라고 합니다. 합자회사의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합자회사의 상호에는 반드시 '합자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18조 및 제19조 참조).

상호 결정시 유의사항

▪ 상호를 결정할 때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며, 설립하려는 합자회사에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

▪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제4조).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며,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8조제4항제1호).

상호등기

▪ 회사의 상호는 설립등기 사항이므로 설립등기를 하면 자동으로 상호가 등기되며, 별도로 상호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상업등기법」 제37조제1항).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2조).

동일상호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Q. 합자회사 상호를 등기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비슷한 상호가 너무 많아서 회사상호를 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다른 회사가 등기한 상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없으므로, 회사설립 등기를 하기 전에 선정한 상호가 같은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는 기존 회사의 상호와 동일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지은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 알아보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열람·발급 →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 등기상호검색>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 이 경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23조제4항).

2.1.2. 정관의 작성

정관의 작성

사원의 정관작성

▪ 합자회사의 정관은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 각각 1명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총사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178조 및 제179조).

> ※ **합자회사 정관 예시**
>
> 합자회사의 경우 『예시표준정관』을 참조하여 각 합자회사에 맞게 정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절대적 기재사항)

▪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270조, 제269조 및 제179조).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년월일
7.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아니면 유한책임인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상대적 기재사항)

▪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을 말합니다.

▪ 합자회사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는 특정사원의 업무집행권의 제한(「상법」 제269조 및 제200조제1항), 회사대표제도(「상법」 제269조 및 제207조), 공동대표제도(「상법」 제269조 및 제208조제1항), 퇴사사유(「상법」 제269조 및 제218조제1호), 퇴사사원의 지분환급의 제한(「상법」 제269조 및 제222조), 회사의 존립기간(「상법」 제269조 및 제227조제1호) 등이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임의적 기재사항)

▪ 합자회사의 본질, 법의 강행규정,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2.2.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2.2.1. 인허가 및 세금납부

사업의 인허가 확인

인허가 여부 확인하기

▪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

▪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영위하려는 업종에 대한 사업허가·등록·신고사항의 점검은 업종선정 과정과 함께 창업절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인허가 업종으로서 사업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도 사업허가증이나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허가 사항 확인방법

▪ 사업의 인허가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에 들어간 다음 인허가 서류 조회를 클릭한 후 업종코드에서 해당 업종을 찾아 검색하면 인허가 업종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구비서류, 처리기한 등은 업종별로 다르므로 접수기관에 문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부

등록면허세의 납부

▪ 합자회사 설립 시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가목).

▹ 납입한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

▪ 합자회사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매 1건당 40,200원을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마목).

※ 과밀억제권역에 따른 중과세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위의 등록면허세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본문).

※ 다만,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함)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3배가 가산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단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

현재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함]

·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함)은 제외함]

지방교육세의 납부

▪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 다만,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加減)조정될 수도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2.2.2. 설립등기 및 사업자신고 등

합자회사 설립등기

회사의 성립

▪ 합자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등기신청인

▪ 합자회사 설립등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등기사항

▪ 합자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71조, 제269조 및 제180조).

1.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함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3. 존립기간 그 밖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 여부

설립등기 시 제출서류

▪ 설립등기 신청인은 설립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40호).

▹ 정관

-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 총사원동의서
- 업무집행사원과반수동의서
- 주민등록표등본
- 대표사원의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등기신청 방법 및 절차

등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합니다(「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64조제1항 본문).

·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함]인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시·도별 등기소 위치 및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서비스 소개 → 등기소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신청**: 신청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그 신청인을 대리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기록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등기신청권자와 법인이 아닌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67조제2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 접속하시면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 그리고 작성방식에 관해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설립등기를 다음과 같이 전자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의 개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성립합니다.

※ 신청 및 첨부서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절차 및 제출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안내 → 제출서류 및 교부 → 사업자등록신청 제출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 정관(외국법인만 해당) 1부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전차한 경우에만 해당) 1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 사업허가증·사업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 1부
-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 1부
-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1부
-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 1부
-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1부
- 신탁 계약서(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만 해당) 1부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법인사업자용)(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 1부

세무서장의 직권등록

▪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거나 국외사업자 등이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를 거쳐 직접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미등록 시 불이익(가산세의 부과)

▪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함)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노동절은 산정에서 제외함)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

3. 합자회사 운영

3.1. 사원의 출자와 지분

3.1.1. 사원의 출자

사원의 출자의무

출자란?

▪ “출자”란 합자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의 재산을 구성할 금전 그 밖의 재산이나 노무 또는 신용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원의 출자의무 발생

▪ 사원은 정관에 의해 확정된 출자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79조제4호).

▪ 사원의 출자에 대해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르며, 「상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95조).

출자의 종류

▪ 출자는 ① 재산출자, ② 노무출자, ③ 신용출자의 세 종류가 있으며, 정관에 규정한 출자의 목적에 따라 회사에 그 출자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195조, 제222조 및 「민법」 제703조제2항 참조).

구분	출자의 내용
재산출자	**재산출자에는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출자와 금전 이외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현물출자가 있습니다. 현물출자 할 수 있는 재산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동산, 여러 종류의 물권(物權)·채권·유가증권 등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노무출자	사원이 회사를 위하여 노무(예: 기술자가 기술상의 노무를 제공)를 제공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로,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계속적이든 일시적이든 상관없습니다.
신용출자	사원이 자신의 신용을 회사가 이용하도록 출자를 하는 경우로, 사원이 회사를 위해 보증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의 신용을 회사에 제공합니다.

▪ 다만, 유한책임(有限責任)사원이 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재산출자(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 등)만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2조).

출자의 이행

출자이행의 시기 및 방법

▪ 사원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출자의무를 이행합니다. 다만, 정관에 출자이행 시기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합자회사 내부관계에 관해서는 정관이나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합자회사는 업무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195조 및 「민법」 제706조 참조).

<출자종류에 따른 이행방법>

구분	출자 방법
금전출자	금전의 지급
현물출자	목적물의 권리이전(등기 및 인도). 다만,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은 그 출자한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않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변제할 책임을 지며, 이자를 지급하는 것 외에 이로 인해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법」 제196조).
노무출자	노무의 제공
신용출자	회사를 위해 보증 또는 담보제공, 회사가 발행한 어음의 배서나 인수

출자이행을 불이행하는 경우

▪ 사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으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195조 및 「민법」 제705조).

▪ 또한 출자의무의 불이행은 사원의 제명(除名)사유가 되며,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220조제1항제1호, 제205조제1항 및 제216조).

출자 변경등기

▪ 사원의 출자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83조).

▪ 변경등기를 할 때, 등기신청인은 출자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45호 참조).

- 총사원의 동의서
- 출자이행증명서(출자의 목적변경 또는 출자증가의 경우)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출자변경에 따른 등기를 하려면 출자가 증가한 경우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 출자가 증가하지 않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40,2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며,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 및 7,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본문).

3.1.2. 사원의 지분

사원의 지분

지분의 개념

▪ 사원의 지분이란 사원이 퇴사할 경우 회사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하거나 회사에 지급해야 할 계산상의 액수를 말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22조 참조).

사원의 지분에 따른 손익분배 비율

▪ 사원의 지분에 따른 손익분배 비율은 합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정관으로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손익분배 비율을 정합니다(「상법」 제269조, 제195조 및 「민법」 제711조).

사원지분의 양도

사원의 동의

▪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무한책임사원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려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97조).

▪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자신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6조).

지분양도·양수 등기

▪ 사원의 지분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므로 지분의 양도·양수에 관한 효과를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분양도 및 양수에 따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180조, 제271조, 제183조, 제37조 및 제40조).

> ※ 지분을 양도한 사원은 ① 퇴사등기를, 지분을 양수한 사원은 ② 입사등기를 해야 합니다. 사원의 입사 및 퇴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합자회사 운영-사원의 입사와 퇴사-사원의 입사와 퇴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분양도 사원의 책임

▪ 지분을 양도하여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25조).

사원지분의 상속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한 경우

▪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의 사망은 무한책임사원의 퇴사원인이므로,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할 경우 사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18조제3호).

▪ 그러나, 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사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부터 3월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19조제1항).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경우

▪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됩니다(「상법」 제283조제1항).

▪ 이 경우에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명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그 중의 1명에 대하여 하면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283조제2항).

사원지분의 압류

지분의 압류

▪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은 양도할 수 있으며,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223조 및 대법원 1971. 10. 25. 선고 71다1931 판결).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년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그 사원에 대하여 6개월 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그 예고는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24조).

3.2. 업무집행 및 대표권

3.2.1.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등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

▪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273조).

※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을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78조).

▪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무한책임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0조제2항).

업무집행사원의 지정

▪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의 1명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1조제1항).

공동업무집행사원의 지정

▪ 정관으로 수인의 무한책임사원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2조).

상업사용인 등의 사용

▪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 전부를 스스로 집행할 필요는 없고, 상업사용인 등의 보조자(예: 지배인 등)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74조).

업무집행 감시권·이의권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감시권

▪ 업무집행권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무한책임(無限責任)을 부담하므로 각 무한책임사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195조 및 「민법」 제710조).

유한책임사원의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 유한책임사원은 영업연도 말에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7조제1항).

▪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한책임사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그 밖의 서류를 열람 및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7조제2항).

업무집행 이의제기 및 결정

▪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 그 각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1조제2항).

※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권한이 없으므로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업무집행권의 상실과 정지

업무집행권의 상실

▪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5조제1항).

> **※ 대법원 판례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 선고]**
>
> 「상법」 제205조제1항은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에 관하여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269조는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상법」 제205조 제1항을 합자회사에 준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법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뿐만 아니라 유한책임사원도 각자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82189 판결).

업무집행권 상실 등기

▪ 업무집행권한의 상실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5조제2항).

> **※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벌칙**
>
> 업무집행사원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가지거나 제3자에게 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22조제1항 및 제632조).
>
> 업무집행사원이 그 직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제1항).

업무집행사원에게 위의 이익을 약속, 공여(供與)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제2항).

업무집행사원이 수수한 이익은 몰수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2조 및 제633조).

업무집행 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의 선임

▪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 또는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의 법원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83조의2).

▪ 이 경우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0조의2제1항).

▪ 직무대행자가 이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0조의2제2항).

3.2.2. 합자회사의 대표

합자회사의 대표

각 무한책임사원의 대표권

▪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무한책임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7조제1문).

※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78조).

회사대표의 지정

▪ 무한책임사원 중에서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각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 중에서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207조제2문 및 제3문).

▪ 회사를 대표할 무한책임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합자회사 설립등기 시에 등기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80조제4호).

공동대표의 지정

▪ 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무한책임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08조제1항).

▪ 이 경우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 있는 사원 1명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8조제2항).

▪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합자회사 설립등기 시에 등기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80조제5호).

대표기관의 권한 및 책임

대표사원의 권한

▪ 회사를 대표하는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9조제1항).

▪ 이러한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9조제2항).

대표사원의 손해배상책임

▪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10조).

대표사원의 변경

대표사원 변경 등기

▪ 대표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83조).

제출서류

▪ 등기신청인은 대표사원의 변경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46호).

- 총사원의 동의서
- 사임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 합자회사 변경등기(대표사원에 관한 변경)를 하려면 40,200원의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 및 7,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대표권한의 상실

법원의 대표권한 상실 선고

▪ 대표사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사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회사대표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216조 및 제205조제1항).

대표권한 상실 등기

▪ 대표권한 상실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이를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16조 및 제205조제2항).

3.3. 사원의 의무와 책임

3.3.1.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제한

무한책임사원의 경업금지의무

무한책임사원의 경업금지의무

▪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무한책임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98조제1항 참조).

무한책임사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무한책임사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이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사원의 제명 및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회사의 개입권	사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사원에 대하여 회사는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98조제2항). 위의 양도청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해야 하며, 다른 사원의 1명이 그 거래를 안 날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98조제4항).
손해배상책임	회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원에게 이득의 양도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98조제3항 참조).
사원의 제명	회사는 사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20조제1항제2호).
업무집행권한의 상실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위반 사원에 대한 업무집행권한 상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205조제1항 및 제216조).

※ 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

-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5조).

무한책임사원의 겸직금지의무

무한책임사원의 겸직금지의무

▪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무한책임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98조제1항).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무한책임사원이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된 경우, 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다른 사원 과반수결의에 의해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로 보아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상실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205조, 제216조 및 제220조제1항제2호).

※ **유한책임사원의 겸직자유**

-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5조).

무한책임사원의 자기거래제한

무한책임사원의 자기거래 제한

▪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결의가 있는 때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99조).

자기거래제한을 위반한 경우

▪ 무한책임사원이 다른 사원 과반수결의 없이 자기거래를 한 경우, 회사는 다른 사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무한책임사원의 제명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무한책임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로 보아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상실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205조, 제216조 및 제220조제1항제3호·제4호).

3.3.2. 사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사원의 책임

무한책임사원의 책임범위

▪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完濟)할 수 없는 때에는 각 무한책임사원은 직접·연대·무한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12조제1항).

※ **대법원 판례 [사해행위취소]**

[1] 「상법」 제269조에 의하여 합자회사에 준용되는 「상법」 제212조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합명회사의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책임은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면 법률의 규정에 기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회사채권자가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여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게 보충적으로 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책임이행 요건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한 대물변제계약 등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무한책임사원 고유의 채무 총액과 합자회사의 부채 총액을 합한 액이 무한책임사원 고유의 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책임이 위와 같이 보충성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률행위 당시 합자회사가 그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었다는 점(「상법」 제212조제1항)이 주장·입증된 경우에는 합자회사의 채무를 고려함이 없이 무한책임사원 고유의 채무 총액과 고유의 재산 총액을 비교하여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상법」 제212조제1항에서 정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란 회사의 부채 총액이 회사의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 즉 채무초과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는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채무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명목상 부채 및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며, 나아가 회사의 신용·노력·기능(기술)·장래 수입 등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산 총액을 산정하면서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7847 판결).

유한책임사원의 책임범위

-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무에 대해 채권자에게 연대(連帶)하여 직접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의 한도에서 채무변제를 부담합니다(「상법」 제279조제1항).
- 다만, 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을 받은 경우, 유한책임사원이 부담할 채무는 배당받은 금액을 가산(加算)하여 채무를 부담합니다(「상법」 제279조제2항).
-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를 감소한 후에도 본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내에는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80조).

※ 각 사원의 변제책임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각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12조제2항).

다만, 회사에 변제자력이 충분한 재산이 있는 등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사원은 회사채무에 대해 변제의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12조제3항).

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의 범위

신입사원의 책임

- 회사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13조).

※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된 경우

√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된 경우,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는 상실되고 무한책임사원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사원이 부담할 채무의 범위는 무한(無限)으로 변경됩니다(「상법」 제282조 전단 및 제213조).

√ 따라서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해서도 무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282조 및 제213조).

※ 대법원 판례 [사원변경등기 등]

[1] 「상법」 제270조는 합자회사 정관에는 각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인지 또는 유한책임사원인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기재된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 변경은 정관변경의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관에 그 의결정족수 내지 동의정족수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26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04조에 따라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한 지분양도가 합자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분양도는 무효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21337 판결).

퇴사원 및 지분양도 사원의 책임

▪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25조제1항).

▪ 또한 지분을 양도한 사원의 경우에도 퇴사한 사원과 마찬가지로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25조제2항).

※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된 경우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된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지위는 상실되고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사원이 부담할 채무의 범위는 본점소재지에서 정관변경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해서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무한(無限)의 책임으로 채무를 부담합니다(「상법」 제282조 후단 및 제225조).

자칭사원의 책임

▪ 합자회사의 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합자회사의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15조).

▪ 유한책임사원이 타인에게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281조제1항).

※ 유한책임사원이 그 책임의 한도를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같습니다(「상법」 제281조제2항).

사원의 항변과 변제책임의 이행

사원의 항변사유

▪ 사원이 회사채무에 관하여 변제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14조제1항).

▪ 회사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 취소 또는 해제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사원은 채권자의 변제청구에 대하여 변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14조제2항).

※ "상계(相計)"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민법」 제492조제1항).

사원의 변제책임 이행

▪ 사원이 회사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회사채무는 소멸하고, 사원의 책임도 소멸합니다. 회사채무를 변제한 사원은 변제자 대위에 따라서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여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구상권을 갖게 됩니다(「민법」 제481조 참조).

▪ 이 밖에도 다른 사원에 대해서는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민법」 제425조 참조).

사원의 변제책임 소멸 및 변경

퇴사한 사원의 책임 소멸

▪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25조제1항).

지분을 양도한 사원의 책임 소멸

▪ 지분을 양도한 사원은 퇴사한 사원과 마찬가지로 양도 등기 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25조제2항).

회사의 해산에 따른 사원의 책임소멸

▪ 회사채권자에 대한 사원의 책임은 본점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67조제1항).

3.4. 사원의 입사와 퇴사

3.4.1. 사원의 입사와 퇴사

사원의 입사

사원입사의 개념

▪ 사원의 입사란 합자회사 성립 후에 입사계약을 체결하고 출자하여 지분을 가지면서 원시적으로 사원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사절차

▪ 합자회사 사원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사원이 입사를 하려면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4조).

> ※ **대법원 판례 [합자회사 신입사원의 사원으로서의 지위 취득 시점]**
>
> 합자회사의 성립 후에 신입사원이 입사하여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정관변경을 요하고 따라서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정관변경은 회사의 내부관계에서는 총사원의 동의만으로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신입사원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정관인 서면의 경정이나 등기부에의 기재를 기다리지 않고 그 동의가

있는 시점에 곧바로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19321 판결).

입사등기

▪ 사원이 입사하면 등기사항이 변경되므로, 회사는 새로 입사하는 사원에 대해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해당 법원등기소에서 입사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83조).

※ 등기신청인이 사원의 입사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호).

▪ 등기신청인은 사원의 입사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43호 참조).

- 총사원동의서,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서(새로이 출자한 경우)
- 출자이행증명서(새로이 출자한 경우)
- 다른 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지분양수의 경우)
- 정관(상속입사인 경우)
-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상속입사인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사원의 입사로 자본액이 증가한 경우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의 등록면허세를, 자본액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40,2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 수도권 및 대도시에 설립 또는 전입 후 5년 내의 회사의 자본이 증가된 경우, 그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3배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으로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加減)조정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등기신청수수료는 7,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본문).

입사 사원의 책임범위

▪ 회사 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13조).

사원의 퇴사

사원퇴사의 개념

▪ 사원의 퇴사란 회사의 존속 중에 특정 사원이 사원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사의 원인

▪ 사원이 퇴사하는 사유로는 다음과 같이 ① 임의퇴사(「상법」 제269조 및 제217조), ② 「상법」상 퇴사원인에 따른 당연퇴사(「상법」 제269조 및 제218조), ③ 법원의 제명에 따른 강제퇴사(「상법」 제269조 및 제220조), ④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상법」 제269조 및 제224조)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임의퇴사	√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연도 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전에 이를 예고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17조제1항). √ 또한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17조제2항).
당연퇴사	√ 사원은 ① 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망, ④ 성년후견개시 ⑤ 파산, ⑥ 제명 등의 사유로 퇴사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18조). √ 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19조제1항). √ 상속인이 전항의 통지 없이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19조제2항).

강제퇴사	√ 사원이 ①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② 「상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한 때, ③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④ 권한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⑤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20조제1항).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년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그 사원에 대하여 6개월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24조제1항). √ 퇴사예고는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24조제2항). ※ 「상법」 제224조제2항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는 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서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합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3516 판결).

※ 유한책임사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퇴사되지 않습니다(「상법」 제284조).

※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무한책임사원과 달리 퇴사하지 않고,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됩니다(「상법」 제283조 제1항).

퇴사원에 대한 지분의 환급

▪ 퇴사한 사원은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무한책임사원의 경우만 해당함)에도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22조).

▪ 제명된 사원과 회사와의 계산은 제명의 소를 제기한 때의 회사재산의 상태에 따라서 하며 그 때부터 법정이자를 붙여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21조).

퇴사등기

▪ 회사는 퇴사하는 사원에 대해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해당 법원등기소에서 퇴사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83조).

※ 등기신청인이 사원의 퇴사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호).

▪ 등기신청인은 사원의 퇴사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44호 참조).

- 사원의 퇴사예고서
- 퇴사통지서
- 정관(정관에서 정한 사유발생으로 퇴사하는 경우)
- 총사원(무한책임사원)의 동의서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 압류채권자의 퇴사예고서
- 심판 또는 결정등본
- 지분양도계약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
>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등기신청수수료는 7,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제1항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본문).
>
>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으로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加減)조정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퇴사원의 책임

▪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으며, 지분을 양도한 사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25조).

퇴사원의 상호변경청구권

▪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26조).

3.5. 본점과 지점

3.5.1. 본점의 이전

회사의 본점

본점의 개념

▪ 회사의 본점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말하며, 본점소재지가 회사의 주소가 됩니다(「상법」 제171조 참조).

본점소재지의 정관기재 및 등기

▪ 합자회사의 본점소재지는 정관에 절대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본점의 소재지는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179조제5호 및 제180조).

본점의 이전

본점의 이전등기

▪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82조제1항).

※ 등기신청인이 본점이전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호).

본점이전 등기의 신청

▪ 본점이전 등기는 다음과 같이 본점소재지에 따라서 신청하는 양식 및 방법이 다릅니다.

구분	등기신청 방법
본점소재지가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 내로 이전하는 경우	√ 본점을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이전 등기는 회사의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신청합니다(「상법」 제182조 및 제269조 참조). √ 본점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합자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서(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이전)』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42-1호). 1. 총사원동의서(정관 및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동의서)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점소재지가 다른 법원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는 경우	√ 본점을 다른 법원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55조). √ 본점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합자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서(타관할로의 본점이전)』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42-2호). 1. 총사원동의서(정관 및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동의서)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이전등기 신청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

▪ 본점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등기신청 방법
본점소재지가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 내로 이전하는 경우	√ 등록면허세는 112,500원,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등기신청수수료는 7,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제1항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본문).
본점소재지가 다른 법원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는 경우	√ 신(新)소재지의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 만약, 대도시(과밀억제권역을 말함) 밖에 있는 본점을 대도시 내로 이전하면 그 본점이전은 회사의 설립으로 파악하여 회사설립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이 등록면허세는 3배가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 참조). √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신(新)소재지의 등기신청수수료는 35,000원, 구(舊)소재지의 등기신청수수료는 7,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

※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으로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加減)조정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3.5.2. 지점의 설치와 이전, 폐지

지점의 설치

지점설치 등기

▪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81조).

※ 등기신청인이 지점에 관한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호).

제출서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지점설치 등기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81조 참조). 지점설치 등기를 하는 경우 『합자회사지점설치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사원동의서(정관 및 업무집행사원 과반수동의서)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4.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현재 합자회사 지점 관련 등기에 관한 양식은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주식회사 지점관련 등기에 관한 양식을 다운받아 합자회사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점의 이전

지점이전 등기

▪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82조제2항).

※ 등기신청인이 지점에 관한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호).

제출서류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지점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총사원동의서(정관 및 업무집행사원 과반수동의서)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4.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지점의 폐지

지점폐지 등기

▪ 지점을 폐지한 경우에는 회사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지점폐지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83조).

※ 등기신청인이 지점에 관한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호).

▪ 회사 본점소재지에서 지점폐지 등기를 위해서는 지점폐지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총사원동의서(정관 및 업무집행사원 과반수동의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
> · 지점설치·이전·폐지 등기를 하려면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 · 지점설치·이전·폐지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며, 대도시(과밀억제권역을 말함. 이하 같음)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 면허세는 3배가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 ·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이며, 등기신청수수료는 7,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
> ※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으로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加減)조정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3.6. 회사회계와 손익분배

3.6.1. 상업장부작성 및 손익분배

상업장부의 작성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 작성의무

▪ 회사는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해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29조제1항).

▪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릅니다(「상법」 제29조제2항).

> ※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 등 회계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업장부 작성방법

▪ 회계장부에는 거래와 그 밖의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상법」 제30조제1항).

▪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해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30조제2항).

손익의 분배

손익분배 방법

▪ 손익분배의 비율과 관련된 규정이 「상법」에 없으므로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총사원의 동의로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사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그 비율을 정합니다(「상법」 제269조, 제195조 및 「민법」 제711조제1항).

▪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269조, 제195조 및 「민법」 제711조제2항).

손익분배 시기

▪ 손익분배의 시기를 정관에 규정한 경우에는 정관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해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하므로 영업연도 말에 손익을 분배합니다(「상법」 제30조제2항 참조).

4. 회사의 합병, 소멸 등

4.1.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4.1.1. 영업양도

영업양도의 개념

영업양도란?

▪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9314 판결).

> ※ **대법원 판례(영업의 양도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
>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기만 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
> ※ **대법원 판례(영업의 양도의 판단기준)**
>
> [1]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 [2]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이므로 영업양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계약이 있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영업재산의 이전 경위에 있어서 사실상, 경제적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영업양도가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 있고 그 계약에 따라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양도받았다고 볼 수 없어 「상법」상 영업양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영업양도와 합병의 비교

▪ 영업양도와 비슷한 조직변경 형태에는 합병이 있습니다. 영업양도와 합병은 다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영업양도	합병
당사자	회사, 개인상인, 비상인(양수인) 간	회사와 회사 간
방식	특정된 방식이 없음	법정의 절차에 따라야 함
재산이전 방법	특정승계(재산의 개별적 이전)	포괄승계
고용이전 여부	포괄승계	포괄승계

영업양도 절차

총사원의 동의

▪ 영업양도를 하려면 정관변경이 필요하므로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4조).

▪ 다만, 회사를 청산할 때에는 청산인이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함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으면 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57조).

▪ 또한 영업을 양수하여 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04조).

영업양도 방식(불요식 계약)

▪ 영업양도의 계약방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 계약은 일반적으로 양도 및 양수받는 회사 간의 영업양도계약서 작성에 따른 서면합의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영업양도의 효과

고용관계의 이전(포괄승계)

▪ 영업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영업재산의 이전

▪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이므로 양도인이 재산이전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의 경우와 같이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특정 승계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전행위를 해야 합니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2018 판결).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

▪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41조제1항).

▪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41조제2항).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상호속용)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42조제1항).

※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란 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이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

▪ 이 경우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습니다(「상법」 제42조제2항).

양수인에 대한 변제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43조).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44조).

※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 영업양수인에 대해서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그 변제책임을 인정하는 「상법」 제44조의 법리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받아들이는 취지를 광고에 의하여 표시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그 취지를 표시한 경우에도 적용되어, 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위 채무변제의 책임이 발생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 영업양수인이 위에 따라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상법」 제45조).

4.1.2. 합병

합병의 개념

회사의 합병

▪ “합병”이란 「상법」 상의 절차에 따라,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여 그 재산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하고, 회사 구성원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구성원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

▪ 「상법」 및 특별법에는 다음과 같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해산(解散)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74조제3항).
- 다른 회사와의 합병으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 회생절차 중인 회사는 회생계획에 '합병'에 관한 사항을 정해 합병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제210조 및 제211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주권상장회사(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함)가 그 계열회사(계열회사가 아닌 법인 중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었던 법인을 포함함)와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주권상장회사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합병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65조의4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합자회사의 합병형식

-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174조제1항), 회사의 종류가 다른 회사와도 합병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합자회사가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합니다(「상법」 제174조제2항 참조).

합병절차

합병계약의 체결

- 합병을 하려는 회사의 대표기관 간에 합병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됩니다.

- 합자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상법」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계약서에는 합병의 조건, 합병을 할 날,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종류,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회사의 정관작성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 다만, 합자회사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합병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523조, 제524조 및 제603조 참조).

합병의 결의

- 합자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30조).

- 신설합병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각 회사는 합병결의에서 설립위원을 선임해야 하며, 선임된 설립위원은 회사의 정관작성 그 밖의 설립에 관한 행위를 수행합니다(「상법」 제175조제1항).

회사채권자 이의제기 절차

-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32조제1항).

- 채권자가 위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32조제2항).

-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32조제3항).

※ 업무집행사원이 합병결의에 대한 공고를 게을리 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또는 회사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에 위반하여 합병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제635조제1항제2호 및 제14호).

합병등기

합병등기

▪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①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②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③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33조).

▪ 위 각각의 합병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규칙」 제118조,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48-1호, 제48-2호 및 제48-3호 참조).

구분	제출서류
변경등기 **(합자회사가 존속회사로 되어 흡수합병을 한 경우)**	√ 합병계약서 √ 총사원동의서 √ 공고 및 최고를 한 증명서 √ 변제영수증 또는 이의없다는 진술서 √ 주민등록표등본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주식금액,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를 납부하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가목 및 제151조).
해산등기 **(합자회사가 소멸회사인 흡수·신설합병의 경우)**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등록면허세는 매 1건당 4만2백원을 납부하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바목 및 제151조).
설립등기 **(합자회사가 신설회사로 되어 신설합병을 한 경우)**	√ 정관 √ 소멸회사의 총사원동의서 √ 합병계약서 √ 설립위원자격증명서 √ 공고 및 최고를 한 증명서 √ 변제영수증 또는 이의 없다는 진술서 √ 신설회사의 총사원동의서 √ 주민등록표등본 √ 업무집행사원과반수결의서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 대표사원의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의 변경등기, 해산등기의 등기신청수수료는 7,000원이며, 신설등기의 등기신청수수료는 35,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

합병의 효과 등

합병의 효력발생

▪ 회사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① 변경등기, ② 해산등기, ③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34조).

합병의 효과

▪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35조).

4.1.3. 조직변경

합자회사의 조직변경

조직변경이란?

▪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상법」 상의 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조직변경이라 합니다.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로의 변경

▪ 합자회사가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는 합명회사로의 변경을 말하며, 이 경우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86조제1항 참조).

▪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②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하고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가 있습니다(「상법」 제286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합자회사의 조직변경 절차

총사원의 동의

▪ 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6조제1항).

▪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6조제2항).

조직변경 등기

▪ 합자회사를 합명회사로 변경할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86조제3항).

※ 등기신청인이 조직변경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1항제1호).

▪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17조).

▪ 합자회사의 해산등기와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산등기 및 설립등기 신청 중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각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두개의 등기신청 모두 각하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66조 및 제67조).

> ※ “각하(却下)”란 심사·재심사의 청구가 법정청구기간, 청구대상, 방식 등이 법령에 위반되어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결정 또는 재결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사전).

▪ 조직변경으로 인한 변경 후의 회사에 관한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회사의 성립 연월일, 변경 전의 회사의 상호·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해야 하며, 합자회사의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등기신청서에 변경 후의 회사의 상호·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65조).

>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
> 조직변경에 따른 해산등기 및 설립등기를 하려면 다음을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제1항, 제2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항 본문).

구분		납부액
등록면허세	해산등기	40,200원
	설립등기	납입한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등록면허세액이 112,500원 미만인 경우 112,500원)
등기신청수수료	해산등기	7,000원
	설립등기	35,0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4.2. 합자회사의 소멸

4.2.1. 해산 및 회사의 계속

합자회사의 해산

회사의 해산이란?

▪ “회사의 해산”이란 회사가 영리적 활동을 마치고, 청산 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해산에 의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지만, 해산으로 인해 바로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법인격이 그대로 존속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45조 참조).

합자회사의 해산사유

▪ 합자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합니다(「상법」 제285조제1항, 제269조 및 제227조).

1. 존립기간의 만료나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명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7.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

>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해산하는 경우(해산명령 및 해산판결)**

구분	해산명령	해산판결
사유	①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②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또는 1년 이상 영업을 휴지(休止)하는 때, ③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상법」 제176조제1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상법」 제269조 및 제241조)
절차	① 이해관계인의 청구, ② 검사의 청구, ③ 법원의 직권(「상법」 제176조제1항)	각 사원의 청구(「상법」 제269조 및 제241조제1항)
적용법률	「비송사건절차법」	「민사소송법」
재판관할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1항)	본점소재지의 관할지방법원(「상법」 제269조, 제241조제2항 및 제186조)
효과	해산명령재판의 확정으로 해산(「상법」 제269조 및 제227조제6호)	각 사원이 승소한 경우 판결의 확정으로 해산(「상법」 제269조 및 제227조 제6호)하며, 각 사원이 패소한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상법」 제269조, 제241조제2항 및 제191조)

해산의 효과

▪ 해산으로 합자회사는 청산절차에 들어가며, 합자회사의 권리능력은 청산목적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45조).

해산등기

▪ 회사가 합병이나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해산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28조).

※ 등기신청인이 해산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1호).

▪ 합자회사가 해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06조 및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49호).

- 총사원의 동의서(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한 경우)
- 정관(정관소정의 사유발생으로 해산한 경우)
- 정관 소정의 사유발생을 증명하는 서면
-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퇴사예고서
- 등기신청인 자격증명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해산등기를 하려면 40,200원의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 및 7,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회사의 계속

회사계속의 개념

▪ "회사의 계속"이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해산된 회사가 회사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사원의 동의로 다시 해산 전의 회사로 복귀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계속의 사유

▪ 위의 합자회사 해산사유 중 ① 존립기간의 만료나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및 ②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않은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29조제1항).

▪ 또한 합자회사 해산사유 중 ③ 사원이 1명으로 된 때에는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29조제2항).

▪ 이 밖에도 유한책임사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6조제2항).

회사계속의 등기

▪ 회사가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29조제3항).

※ 등기신청인이 회사계속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및 제1호).

▪ 회사계속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계속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09조 및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52호).

- 유한책임사원가입증명서면 및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서
- 무한책임사원가입증명서면 및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서
- 출자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
-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회사계속등기를 하려면 40,200원의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 및 7,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4.2.2. 합자회사의 청산

합자회사의 청산

청산의 개념

▪ 일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회사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청산”이라고 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간 회사를 “청산 중의 회사”라 합니다. 회사의 청산은 법원이 감독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118조제1항 참조).

청산회사의 권리능력

▪ 청산중의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45조).

합자회사의 청산방법

▪ 합자회사의 청산은 ① **임의청산(任意淸算)**과 ② **법정청산(法定淸算)**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247조 및 제250조 참조).

임의청산 절차

임의청산이란?

▪ “임의청산”이란 법정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47조제1항 참조).

▪ 다만, ① 사원이 1명으로 된 때 또는 ②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해산된 경우에는 임의청산에 의해 회사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법정청산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47조제2항 참조).

정관의 규정 또는 총사원의 동의

- 임의청산을 하려면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에 대하여 정관에 규정하고 있거나,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47조제1항 전단).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

- 해산사유가 있는 날부터 2주간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47조제1항 후단).

채권자 보호절차

-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催告)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47조제3항 및 제232조제1항).

- 채권자가 이의제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재산 처분방법을 승인한 것으로 보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47조제3항, 제232조제2항 및 제3항).

- 만약 회사가 위의 절차를 위반하여 그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회사채권자를 해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48조제1항). 다만, 법원에 취소의 소를 청구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이의절차 공고 또는 최고를 하지 않고 회사재산을 처분하여 이익을 받은 사람이나 전득(轉得)한 사람이 재산처분 당시 또는 전득 당시에 회사채권자를 해(害)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48조제2항 및 「민법」 제406조제1항 단서).

  - 회사채권자는 처분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그 처분취소 청구의 소는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48조제2항, 제186조 및 「민법」 제406조제2항).

- 회사채권자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처분취소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그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248조제2항 및 「민법」 제407조).

임의청산의 청산종결 등기

- 임의청산절차로 청산을 마친 경우 회사는 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 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47조제5항).

- 청산종결 등기는 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합니다(「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 청산종결등기를 하려면 40,200원의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 및 7,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법정청산 절차

법정청산이란?

- "법정청산"이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와 같은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을 정하지 않은 때에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서 청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50조).

법정청산 사유

▪ 사원이 1명이 되어 해산한 때,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법정청산 절차에 따라 청산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27조제3호·제6호, 제247조제2항 및 제250조 참조).

청산인의 선임

▪ 청산인의 선임방법

▹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의결로 청산인을 선임하며,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은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됩니다(「상법」 제287조).

▹ 다만, 회사가 ① 사원이 1명으로 된 때 또는 ②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인하여 해산된 때에는 법원은 사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52조).

※ 회사가 법원에서 선임한 청산인에게 사무의 인계를 게을리 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0호).

※ 청산인의 해임

사원이 선임한 청산인은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1조 및 제269조).

청산인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2조 및 제269조).

▪ 대표청산인의 선임

▹ 청산인은 각자 청산중의 회사를 대표하지만,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265조, 제207조 및 제208조).

▹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경우에는 해산 전의 정함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고, 법원이 여러 명의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법원이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55조).

▹ 대표청산인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나, 청산인의 직무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善意)의 제3자에게 대항(對抗)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54조제3항, 제265조 및 제209조제2항).

▪ 청산인 선임등기

▹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53조제1항).

√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다만,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청산인의 주소를 제외함)

√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 수인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청산인 등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50호).

√ 총사원의 과반수 결의서

√ 선임결정서등본(법원이 선임한 경우)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 청산인의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

√ 사임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 주민등록등(초)본

√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청산인 선임등기를 하려면 등록면허세 40,200원과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7,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청산사무의 집행

▪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해야 하며, 사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청산의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56조).

▪ 청산인이 합자회사 청산시 수행해야 하는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	내용
1. 현존사무의 종결	청산인은 회사의 해산 당시에 아직 종료하지 않은 사무를 완료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54조제1항제1호).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청산인은 회사가 가진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그 채무의 이행을 받아야 하며,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54조제1항제2호). 채권의 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지만, 사원에 대한 출자청구에 대해서는 회사의 현존재산이 그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변제기에 불구하고 각 사원에게 출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출자청구는 각 사원의 출자의 비율에 따라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58조). 회사채무의 변제도 변제기에 하는 것이지만,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회사채무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59조제1항). √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에는 이자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변제해야 하고, 이자 있는 채권으로서 그 이율이 법정이율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59조제2항 및 제3항). √ 조건부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그 밖의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액을 변제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59조제4항).
3. 재산의 환가처분	청산인은 회사재산을 청산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금전으로 바꾸는 처분행위를 해야 하며, 그 환가처분의 방법은 재산을 개별적으로 매각하는 것 외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57조).

4. 잔여재산의 분배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完濟)한 후, 남은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합니다. 다만,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60조). 잔여재산의 분배기준을 정관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사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합니다(「상법」 제269조, 제195조 및 「민법」 제724조제2항).

▪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그 과반수의 결의로 정하며,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은 위의 직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254조제2항 및 제3항).

▪ 청산인은 청산도중에 파산원인을 발견한 때에는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54조제4항 및 「민법」 제93조).

청산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자기거래제한

▪ 회사와 청산인은 위임관계이므로, 청산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산사무를 수행해야 하며, 청산인이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65조, 제382조제2항 및 「민법」 제681조).

▪ 청산인이 임무를 게을리 하는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대표청산인이 사무집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69조, 제265조, 제399조, 제401조 및 제210조 참조).

▪ 청산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원 과반수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65조 및 제199조).

※ 청산인 직무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벌칙

√ 청산인이 그 직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가지거나 제3자에게 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22조제2항 및 제632조).

√ 청산인이 그 직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제1항).

√ 청산인에게 위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제2항).

√ 청산인이 수수한 이익은 몰수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상법」 제633조).

√ 위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2조).

과태료 부과

√ 청산인이 청산도중 파산원인을 발견하였음에도 파산선고 신청 및 공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2호).

√ 청산인이 회사채무를 완제하지 않고 사원에게 회사재산을 분배하거나,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해 필요재산을 보류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5호).

청산의 종결

▪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총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63조제1항).

▪ 계산서를 받은 사원이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청산인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63조제2항).

▪ 회사의 장부와 영업 및 청산에 관한 중요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해야 하고,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총사원 과반수결의로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66조).

법정청산의 청산종결 등기

▪ 법정청산절차로 청산을 마친 경우 청산인은 계산서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 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64조).

※ 등기신청인이 청산종결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호).

▪ 청산종결 등기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51호).

- 잔여재산처분계산서(임의청산)
- 청산계산승인서(법정청산)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청산종결등기를 하려면 40,200원의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 및 7,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